KOSHA GUIDE

C - 109 - 2017

- (다)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·제거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해당 플랜트의 기존 개·보수 공사 내용 및 각 설비별 보수 이력(설계사양 및 데이터, 정비내용 등)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계획, 공정 및 화학물질 취급 계획 등은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7) 환기시설, 가스측정기, 감지기(경보기), 소방설비 및 비상발전기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(8) 화재·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은 가장 심각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
- (9)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, 비상사태를 주변 사업장 또는 인근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·안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(10) 화기작업,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11) 공정안전보고서(PSM)대상 사업장의 경우 화재·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 예방 중심으로 공정안전자료, 공정위험성평가서, 안전운전계획,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6. 고위험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

6.1 화기작업

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·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